

2021년도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6. 2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4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25건(안건번호 제2021-68323호~6893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68323호~68329호(순번 1번~7번)는 ■■■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가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68330호~68354호(순번 8번~32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9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872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7612호~8483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872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2쪽의 OSP명, 5쪽의 저작물명, OSP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D, A,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OSP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정보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8쪽~2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2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7번은 2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들이 다수의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각각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05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D, A, B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7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32번은 관리자인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소설 불법복제물을 무료 내지 170 포인트에 제공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25건임.
(순번 8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569화와 외전을 5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림 파일인 'gif'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25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219화를 5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순번 8번과 동일하게 그림 파일인 'gif'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C, D, A, B 위원: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32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33번~61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89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SW,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다잉 라이트'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다잉 라이트'를 2,8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15. 1. 26.에 출시한 PC 게임으로, STEAM 사이트에서 43,000원에 구매 가능함.

- A 위원: 다운로드 형태의 게임저작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본 안건과 같이,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한 일반 게임저작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지만, 클라이언트 자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일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음.
- B 위원: 닌텐도와 같은 콘솔 게임의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콘솔용 게임 파일의 경우, PC의 인터넷상에서 파일 자체를 불법복제, 유통하고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콘솔 게임 파일 자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콘솔 게임과 같은 설치 및 실행 방법을 가진 PC용 게임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는 것이 맞음.

(방송 '몽쳐야 쏜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몽쳐야 쏜다'를 118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6. 13.에 방영한 19화 전체 분량인 약 108분을 mp4 파일로 제공함. 채널A에서 2021. 2. 27.부터 현재 20화까지 방영중임.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화당 1,650원에 구매 가능하며, 티빙(TIVING) 등 OTT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SW ‘한컴오피스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한컴오피스 2020’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교육기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리얼 넘버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체험판 30일 제공하고 있으며, 정품가는 190,190원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D, B, A, E 위원: 순번 33번~617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3번~61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68323호~68939호(순번 1번~61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1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제 제2021-7612호~8483호(순번 1~872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3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